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규모 추정

2024년 6월 28일 (金)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규모 추정

2024.6.28.(금) 정책실 초빙연구위원 김 창 배

- 부유층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된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공제한도 조정을 우선 검토함
  - 유산취득세 도입은 대수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며 최고 세율 문제는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아 '부자감세' 프레임과 충돌 가능성
- 물가반영 등을 통한 미세조정 보다는 99% 국민들을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과감한 공제한도 조정이 개편의 목표가 되어야함
- 추정결과, 인적공제를 기초공제로 통합하고 공제한도는 35~75억원으로 상향 필요
  - 피상속인 비율 1.15% 유지할 경우 공제한도는 약 35억원
  - 미국 기초공제액과 한·미 국민소득 차이 반영할 경우 공제한도는 약 75억원

## 1. 논의의 배경

- 당정이 기업인은 물론 일반인의 상속세 체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편 논의에 시동
  -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상속·증여세 개편 토론회에서 '30년 묵인 상속·증여 공제 한도 인상'에 대해 공감
  - 기재부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최근의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상속세 납세 인원, 2000년 이후 약 11배 급등
    - 2000년 1,389명(사망자 대비 0.56%) ⇒ 2022년 15,760명(사망자 대비 약 4.56%)
  - 매매가격 10억원이 넘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비중
    - 2024년 12.1% ⇒ 2030년은 34.1% ⇒ 2035년에는 60% 상회 (한국경제인협회 추정)
- 이에 본고는 유산취득세 도입,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공제한도 조정안을 우선 검토하고자 함
  - 공제한도 조정이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

- 유산취득세 도입은 대수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일 뿐 아니라 중산층도 여전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
- 최고 세율 문제는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아 ‘부자감세’ 프레임과 충돌 가능성

## 2.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

### □ 우리나라 상속세 인적 공제제도

○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규모, 1997년부터 28년간 그대로 유지

- 배우자공제는 1996년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 일괄공제는 1998년말 개정시 5억원으로 통일하여 현재까지 유지
- 2015년 개정시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후 그대로 유지

<표 1> 주요국 상속세 인적 공제 개요

국가	실공제금액	주요 공제액
한국	10억원 [배우자 공제 + 공제 ①,②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공제: 5억원 또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 중 큰 금액 (30억원 한도)</li> <li>- 공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2억원</li> <li>•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li> <li>•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li> <li>•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li> <li>•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연수</li> </ul> </li> <li>- 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li> </ul>
미국	1,292만달러 (17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li> <li>• 통합한도: 개인당 1,292만달러(증여포함)</li> </ul>
일본	약 2억엔 (1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제: 3천만엔 + 법정상속인 1인당 6백만엔</li> <li>• 배우자공제: 1.6억엔 또는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li> <li>• 미성년자 공제: 10만엔 x 20세까지 잔여연수</li> <li>• 장애인 공제: 10만엔(중증 20만엔) x 85세까지 잔여연수</li> </ul>
영국	32.5만파운드 (5.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li> <li>* 별도 인적공제 없으나 32.5만파운드까지 0%</li> </ul>
독일	약 90만유로 (1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공제: 50만유로</li> <li>• 자녀공제: 40~45.2만유로(연령에 따라 6단계 적용)</li> <li>• 손자/증손자 공제: 20만유로</li> <li>• 부모 공제: 10만유로</li> <li>• 기타 친족공제: 2만유로</li> <li>• 기타 공제: 2만유로</li> </ul>

## □ 주요국 상속세 인적 공제제도

### ○ (미국) 증여·상속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약 170억원)

- 배우자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전액공제
- 공제한도는 물가변동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 ○ (일본) 기초, 배우자, 미성년, 장애인로 구분되며 실공제금액은 약 2억엔(18억원)

- 기초공제는 3천만엔에 법정상속인 1인당 6백만엔을 합한 금액
- 배우자공제는 1.6억엔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
- 미성년자공제의 경우 10만엔에 20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 금액
- 장애인공제는 10만엔(중증장애인은 20만엔)에 8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 금액

## □ 주요국 공제제도가 주는 시사점

- 배우자 공제의 경우,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으로 보고 전액 공제
- 미국,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년 통합공제 한도 조정함으로써 상속세 대상자가 중산층, 서민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영국의 배우자공제가 무제한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의 실공제금액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
- 한국 10억원, 미국 170억원, 일본 18억원, 영국 5.2억원, 독일 13억원 등

## 3. 증산층을 복원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추정

### □ 모든 인적공제를 기초공제로 통합하고 공제한도는 35~75억원으로 상향

#### ○ 1997년 피상속인 비율 1.15% 유지 ⇒ 통합공제한도는 약 35억원

- 1997년 사망자 244,694명중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2,805명으로 1.15%
- 2021~22년 사망자는 연평균 345,310명중 2022년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15,760명으로 4.56%
- 피상속인의 비율을 1997년 수준(1.15%)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총상속재산 가액은 30억원 초과 50억원 구간에 이하에 해당되며 이에 보간법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35억원이 공제한도가 됨

<표 2> 총상속재산가액별 피상속인 납세자 인원 및 비중(2022년)

총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수(명)	사망자대비 피상속인 비율 (%)	누적비율(%)
500 억원 초과	26	0.01	0.01
500 억원 이하	312	0.09	0.10
100 억원 이하	677	0.20	0.29
50 억원 이하	1,289	0.37	0.67
30 억원 이하	2,035	0.59	1.26
20 억원 이하	6,920	2.00	3.26
10 억원 이하	4,018	1.16	4.42
5 억원 이하	181	0.05	4.48
3 억원 이하	245	0.07	4.55
1 억원 이하	57	0.02	4.56

주: 비율 계산시 코로나 기간을 반영하며 사망자 수는 2021~2022 2년간 평균 345,310명을 이용

- 미국 기초공제액과 韓·美 국민소득 차이 반영 ⇒ 통합공제한도는 약 75억원
  - 1인당 GNI : 韓 35,900 달러로 美 76,370달러의 47% 수준
  - 美 기초공제 (Basic Exclusion) 1,292만 달러 \*47% = 약 600만달러 (75억원)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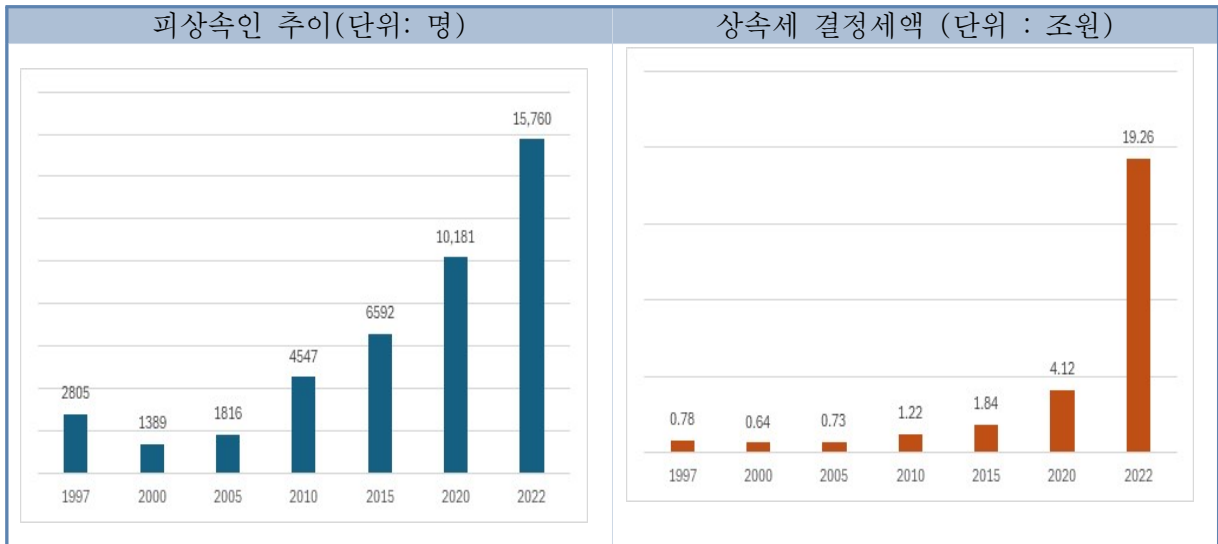
- 정부가 세제개편 시점을 7월말로 못박은 시점에서 일괄공제 소폭 상향 등 미세한 조정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즉 일괄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정도를 반영
    - CPI 1997년 → 2022년 약 90% 상승,
    - 기초공제 5억 x 190% = 9억 5천만원
-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 대상이 상위 1%내외로 국한되는 과감하게 공제한도를 조정을 고민할 필요
- 이에 본고의 공제한도 추정안은 7월말 예고된 세제개편과 그 이후 전개될 수 있는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모든 인적공제를 기초공제로 통합하고 공제한도는 35~75억원으로 상향

### <참고 1> 주요국 상속세 과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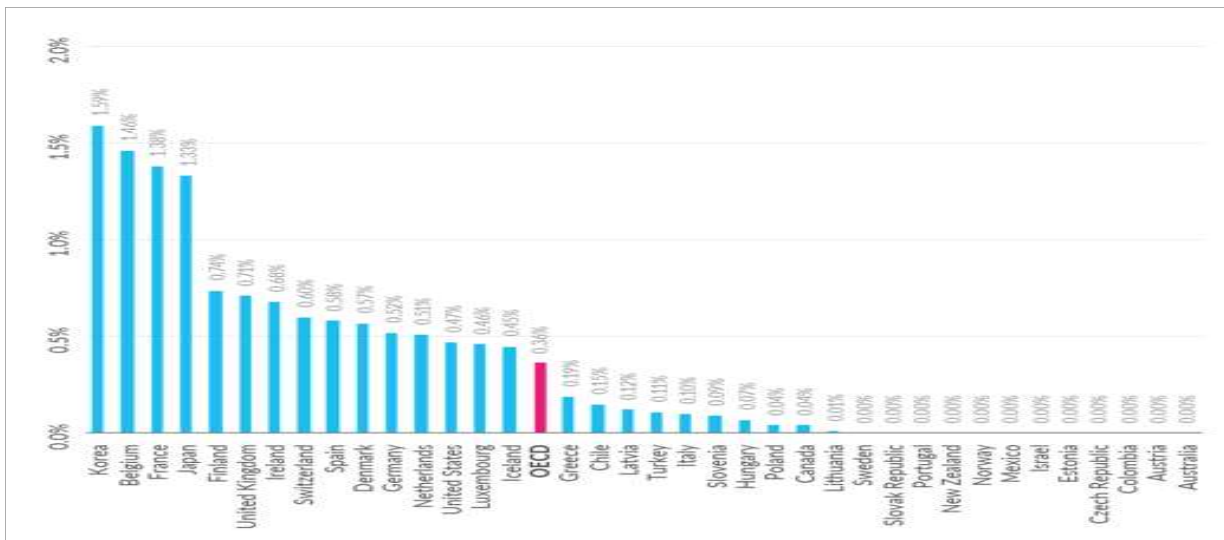
구분	국가
유산취득세 방식(20개국)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 방식(4개국)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자본이득세 방식(4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3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7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출처: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 <참고 2> 1997년 이후 피상속인 및 상속세 결정세액 추이



### <참고 3> 총조세수입에서 상속·증여·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출처: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